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가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「국가재정법」이 개정(’21.12.21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9조의4 신설)
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 성과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)”을 “(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)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4(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
2.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3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·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
4.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, 재정관리

운용실태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제39조의4(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1.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.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·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.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

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, 재정관리 운용실태 조사 및 평가 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③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471